

붙임4

전형별 가점 적용 기준

□ 전형별 가점 기준(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 가점적용)

인사규정 시행규칙	제17조(가점적용) ① 직원의 채용 시 가점적용은 별표 2의 가점적용기준에 따른다. ② <u>국가유공자 가점은 모든 전형단계에서,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가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한다.</u> <개정 2019.10.29> ③ 가점적용은 서류접수 마감일 또는 모집공고에 게재한 날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한하여 적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표 2	<table> <tr> <th rowspan="2">대상분야</th><th rowspan="2">대상자</th><th colspan="3">가점부여점수(만점기준)</th><th rowspan="2">증빙서류</th></tr> <tr> <th>3%</th><th>5%</th><th>10%</th></tr> <tr> <td>국가유공자</td>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/td><td></td><td>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</td><td>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</td><td>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서</td></tr> <tr> <td>장애인</td><td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</td><td>본인</td><td></td><td></td><td>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사본</td></tr> <tr> <td>저소득층</td><td>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지원대상자</td><td>본인</td><td></td><td></td><td>해당 증명서</td></tr> </table> ※ 가점계산 ○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. ○ 동일 분야별 가점적용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.						대상분야	대상자	가점부여점수(만점기준)			증빙서류	3%	5%	10%	국가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	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	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서	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	본인		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사본	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지원대상자	본인			해당 증명서
대상분야	대상자	가점부여점수(만점기준)			증빙서류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3%	5%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	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	국가보훈처 발행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해당하는 장애인	본인		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사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저소득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지원대상자	본인			해당 증명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